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차 례

I. 개관	1
1. 조직 및 정원	1
2. 예산안 개요	3
3. 세출예산안 명세	5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검토의견 요약	9
II. 검토의견	17
1. 인건비(1001-150)	17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7
나. 인건비 예산안 규모 검토	17
2. 본부기본경비(1011-250)	22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22
나. 상용임금 집행률 개선 필요	22
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유지 필요성 검토 필요	27
3.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1011-251)	3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31
나. 집행실적을 고려한 유류비 예산 편성 필요	31
4. 국선대리인보수등(1031-300)	35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35
나. 국선대리인 사건의 선임률 및 인용률 제고 등 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36
다.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적정 예산 확보 및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42

5.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46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46
나.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의 발간 부수 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 가능성 검토 필요	48
6.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1033-303)	54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54
나.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사업 수행방식의 적정성 검토 필요	56
7. 해외연수(1034-304)	6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61
나.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의 확대 필요성 및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의 유지 필요성 검토 필요	62
8. 재판자료확충(1035-306)	69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69
나.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관련 적정 발간부수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필요	71
9.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1035-500)	76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76
나.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사업의 철저한 사업 및 집행 관리 필요	78
10.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1035-501)	84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84
나.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필요	85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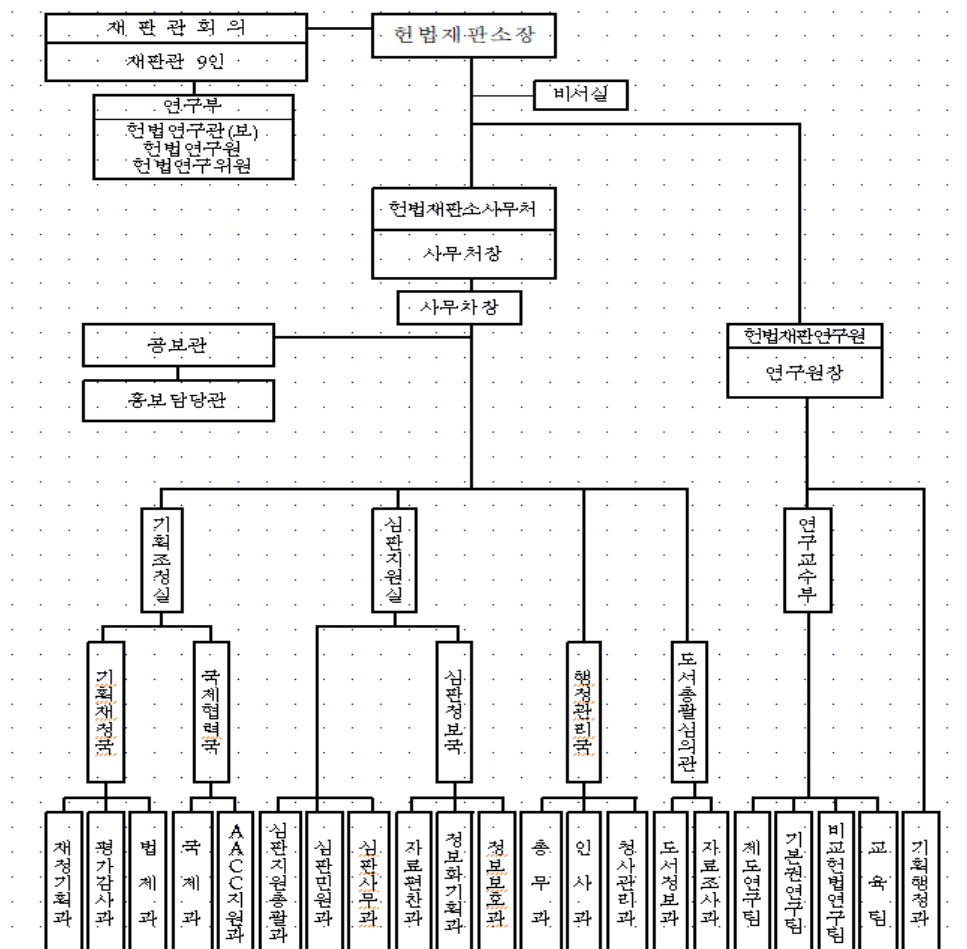
1. 최근 5년간(2022~2026년) 세부사업-목별 예산 현황	91
2. 2025년 주요 사업 세출예산 집행 현황	94
3. 연도별 심판사건의 유형별 접수·처리 현황	96

I. 개 관

1. 조직 및 정원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및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3개)로 이루어진 재판부와 헌법재판소사무처(2실·4국·1관·1심의관·1담당관·16과) 및 헌법재판연구원(1부·1과·4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9월 30일 기준 정원은 총 356명이며, 현원은 총 346명임.

< 헌법재판소의 조직도 >



〈 헌법재판소 정원 및 현원 현황 〉

(2025년 9월 30일 기준)

구분		합계	정무직	특정직	특정직 · 일반직	별정직	일반직
합계	정원	356	11	68	12	2	263
	현원	346	11	67	7	1	260
본부	정원	318	11	68	2	2	235
	현원	313	11	67	2	1	232
소속	정원	38	0	0	10	0	28
	현원	33	0	0	5	0	28

* 주: 현원의 경우 별도 정원(6개월 이상 휴직, 파견 및 교육훈련자 등) 제외

* 자료: 헌법재판소

2. 예산안 개요

가. 예산규모

- 202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세입예산안은 2억 4,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621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 3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5년도 세입예산과의 증감 대비 >

(단위: 백만원)

2025년도 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 감	
		금액(B-A)	비 율(%)
244	245	1	0.4

자료: 헌법재판소

< 2025년도 세출예산과의 증감 대비 >

(단위: 백만원)

2025년도 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 감	
		금액(B-A)	비 율(%)
58,424	62,109	3,685	6.3

자료: 헌법재판소

나. 정부재정규모와의 비교

- 헌법재판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21억 900만원은 정부예산 일반회계 총규모 507조 4,467억원의 약 0.012%에 해당되어 2025년도와 비슷한 비율임.

〈 정부재정규모와 헌법재판소 예산 규모의 대비(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예산	헌법재판소예산	비율(%)
2025년도 예산	473,659,421	58,424	0.00012
2026년도 예산안	507,446,752	62,109	0.00012
전년대비 증가율(%)	2.9	6.3	—

자료: 헌법재판소

다.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 헌법재판소는 전년도 대비 18.5%(108억 1백만원) 증액된 692억 2,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 대비 10.3%(71억 1,600만원)가 감액된 621억 9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 2026년도 예산요구액과 조정액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사항별	요구액(A)	조정액(B)	증감		증감사유
			금액(B-A)	비율(%)	
인 건 비	37,120	35,353	△1,767	△4.8	공통기준 적용
기본경비	7,713	7,710	△3	—	사업량 조정
주요사업비	24,392	19,046	△5,346	△21.9	사업량 조정
합 계	69,225	62,109	△7,116	△10.3	

자료: 헌법재판소

3. 세출예산안 명세

가. 경비별 명세

□ 2026년도 헌법재판소 예산안 중 2025년도 대비 증감비율 및 전체 예산 대비 경비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353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가 증액(6억 6,100만원)되어 전체 예산 중 56.9%를 차지하고 있고,
- 기본경비는 77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가 증액(3억 2,900만원)되어 전체 예산 중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사업비는 190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가 증액(26억 9,500만원)되어 전체 예산 중 30.7%를 차지하고 있음.

< 2026년도 세출예산안 경비별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액(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구성비 (%)
			금 액 (B-A)	비 율 (%)	
인 건 비	34,692	35,353	661	1.9	56.9
기본경비	7,381	7,710	329	4.5	12.4
주요사업비	16,351	19,046	2,695	16.5	30.7
합 계	58,424	62,109	3,685	6.3	100.0

자료: 헌법재판소

나. 인건비 명세

- 인건비는 전년 대비 1.9% 증액된 353억 5,300만원이며, 직제상 정원 356명, 별도정원 11명, 기타직 24명 및 2026년 증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보수, 기타직보수, 연가보상비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인건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액(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금 액 (B-A)	비 율 (%)
보수	32,793	33,347	554	1.7
기타직보수	1,661	1,755	95	5.7
연가보상비	238	251	12	5.2
총 액	34,692	35,353	661	1.9

자료: 헌법재판소

다. 기본경비 명세

-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5% 증액된 77억 1,000만원이며, 동 경비로 편성된 사업은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보전금, 유형자산 등임.

〈 2026년도 기본경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액(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금 액 (B-A)	비 율 (%)
본부기본경비	6,955	7,274	319	4.6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426	436	10	2.3
합 계	7,381	7,710	329	4.5

* 자료: 헌법재판소

라. 주요사업비 명세

□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16.5% 증액된 190억 4,600만원임.

- 주요사업의 예산항목 중 전자도서관운영 사업비는 전년 대비 711.4% (21억 8,400만원) 증액된 24억 9,100만원, 헌법재판정보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12.3%(9억 2,500만원) 증액된 84억 2,400만원, 해외연수 사업비는 전년 대비 6.9%(3,900만원) 증액된 6억 400만원이 편성됨.
- 한편,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비는 전년 대비 4.7%(600만원) 감액된 1억 2,100만원,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11.0%(7,400만원) 감액된 5억 9,700만원, 본부운영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6.0% (2억 5,900만원) 감액된 10억 3,300만원,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0.5%(900만원) 감액된 18억 5,600만원, 재판자료확충 사업은 전년 대비 11.9%(4,600만원) 감액된 3억 4,000만원

이 편성됨.

- 헌법재판소예비금(2,500만원)은 전년과 동액으로 편성됨.

〈 2026년도 주요사업비 세부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합 계	16,351	19,046	2,695	16.5
○ 국선대리인보수등	127	121	△6	△4.7
○ 재판활동운영지원	671	597	△74	△11.0
○ 본부운영지원	4,292	4,033	△259	△6.0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65	1,856	△9	△0.5
○ 해외연수	565	604	39	6.9
○ 국제 교류	614	555	△59	△9.6
○ 재판자료확충	386	340	△46	△11.9
○ 헌법재판정보화	7,499	8,424	925	12.3
○ 전자도서관운영	307	2,491	2,184	711.4
○ 헌법재판소예비금	25	25	—	—

자료: 헌법재판소

마. 신규사업 명세(세부사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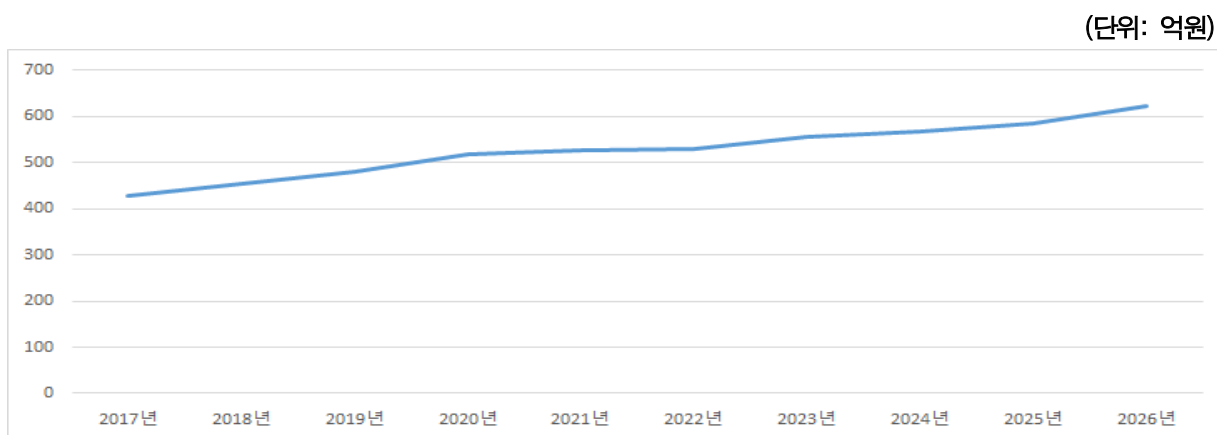
□ 해당 없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검토의견 요약

□ 202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 첫째, 202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621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예산액 증가 비율은 6.3%임. 참고로, 최근 헌법재판소 예산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427억에서 2026년 621억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0년 청사증축 관련 예산 반영으로 40억이 증가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예산 증가율이 낮게 나타남.

< 최근 10년간 헌법재판소 예산액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예산액	427	454	479	519	526	529	555	568	584	621
증감액	21	27	25	40	7	3	26	13	16	37
증가율	5.2	6.3	5.5	8.4	1.3	0.6	4.9	2.3	2.9	6.3

자료: 헌법재판소

- 둘째, 202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는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22억 3,000만원),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구축(20억 1,400만원), 헌법재판소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5억 3,300만원), 9건의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공사(8억 8,500만원) 등 총 19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인사실, 접견실 등의 노후 집기 교체(1억 2,500만원) 사업비 등을 증액하였음.
 - 셋째, 기록물 소독장비 1대 교체(8,500만원) 완료로 인해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액(△7,400만원)되었으며,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7,900만원) 완료 등을 감안하여 국제교류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액(△5,900만원)되었음.
- 202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 증액된 353억 5,300만원으로, 2026년 공무원보수 처우개선율이 3.97%인 점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인건비 불용률은 예년에 비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헌법재판소는 인건비에서 연례적으로 과도한 불용이 발생한 점을 지적받아온바, 이전 연도의 불용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 집행 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정 집행률을 확보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본부기본경비 사업의 세목인 상용임금 예산은 헌법재판소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근로자의 퇴직 또는 휴직으로 인한 결원 기간에 따른 보수 및 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은 보이고 있는바, 민간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휴직·퇴직 시 신속한 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등 집행률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요금및제세 세목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8%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2,549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24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여 2025년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25년 10월 기준으로도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는바,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사업의 세목인 유류비 예산은 헌법재판연구원 공용차량의 유류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년 9월 현재 집행률이 26.6% 정도밖에 되지 않는 등 매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부진한데, 최근 5년 주유소 휘발유값이 가장 높았던 연도의 집행액을 고려하더라도 2026년에 편성된 예산안은 과다편

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소요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넷째,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선대리인보수 사업’은 국선대리인 신청 사건의 증가 추이, 사선대리인 대비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사건을 수행하는 국선대리인에 대한 적절한 활동 환경 조성 및 국선대리인 신청 사건에 대한 선임률, 인용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선대리인 보수 상한액(200만원)이 2009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의 보수 현실화, 소송 수행상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신청에 따른 선임률 및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의 내역사업인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은 2026년 참고인 2명씩 총 4건의 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진술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1,200만원)하여 2025년도 예산(참고인 2명씩 6건 사건 참고인 연구비 등 집행: 1,800만원)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는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이 집중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참고인 지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점, 헌법재판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력 등을 고려할 때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은 전년도에 준하는 수준으로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는 향후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변론 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섯째,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 총서 발간 사업’은 구술 대상자 8명(4기 재판소장 1명, 재판관 7명)에 대하여 25,000원씩 2세트의 구술총서를 700부 발간하는 것을 전제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역사관 내 구술기록관을 마련하여 4기 재판부의 구술기록을 제공하고 있고, 구술총서의 배부 현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내부에 총서를 비치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정보의 소비형태, 종이의 생산·소비를 지양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발간물 부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술총서 발간물 부수를 조정하여 예산의 절감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여섯째,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사업은 「헌법재판소법」의 조문별 의미, 관련 헌법재판 결정례 및 헌법소송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이해관계 당사자 및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헌법재판소는 외부 연구용역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

진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연구원 내의 헌법연구관을 포함한 연구인력(헌법연구관 5명, 변호사, 국외변호사, 박사 등 연구인력 16명, 교수 2명 등)이 외부 연구자에 비해 헌법재판 분야에 대한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헌법재판소가 동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계 교수 등을 활용하여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동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헌법연구관 등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주석서를 발간하는 방식보다 더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 연구용역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 연구자와 헌법연구관 등 내부 인력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공동연구형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곱째**, 해외연수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은 실질적으로 연임된 헌법연구관이 일정 기간 업무를 떠나 새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어 해외연수 사업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과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사업의 예산 규모가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해당 예산을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사업으로 편성하여,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의 수를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해외연수 사업의 목적 달성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는 한정된 예산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의 확대 필요성 및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여덟째**, 재판자료확충 사업의 내역사업인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사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내외부 의견을 반영하여 글자 크기 및 줄 간격 등을 조정함으로써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 대비 1,500만원(46.9%)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발간물들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열람·활용이 가능한 점, 종이 사용량 감소를 통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점, 헌법재판소 내부 배부수량 및 재고수량은 자체 조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독성 향상을 위한 페이지 수 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공보의 적정 발간부수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고수량 등의 조정을 통해 일부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아홉째**,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사업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신규 데이터센터 목표모델 설계 및 이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인바,

최근 3년간 데이터센터 수립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ISP 사업을 수행한 타 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평균 사업예산은 4억 5,600만원, 평균 사업 수행기간은 5개월 가량으로 헌법재판소가 사업 수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액(5억 3,300만원) 및 사업 수행 예상 기간(6개월)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업 범위 및 예산 규모가 적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ISP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및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집행 관리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열째**, 헌법재판소는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6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2026년도 예산안 22억 3,000만원)하였는데,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개년에 걸쳐 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개 시스템을 구축 또는 고도화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전 단계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유념하여,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시스템, 헌법재판소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맞추어 최신 기술 기반을 확보하는 등 사업 목적에 맞는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 등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한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II. 검토의견

1. 인건비(1001-15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무원에게 매월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6,100만원(1.9%) 증액된 353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인건비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32,202	34,692	35,353	661	1.9
보수 (110-01)	30,465	32,793	33,349	556	1.7
기타직보수 (110-02)	1,504	1,661	1,755	94	5.7
연가보상비 (110-05)	233	238	249	11	4.6

자료: 헌법재판소

나. 인건비 예산안 규모 검토

- 헌법재판소는 인건비 예산과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과도한 불용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불용률을 살펴보면, 2021년도 6.7%, 2022년도 4.6%, 2023년도 2.7%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다가 2024년도 4%¹⁾로 다시 높아졌는데 2024년도 정부 전체 일반회계 인건비 불용률 1.2%²⁾와 비교할 때,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불용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5년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2021	31,280	31,280	31,280	29,167	2,113	6.7
2022	31,280	31,237	31,237	29,813	1,424	4.6
2023	31,860	31,860	31,860	30,995	865	2.7
2024	33,533	33,533	33,533	32,202	1,331	4.0
2025. 9	34,692	34,692	34,692	26,065	-	-

* 2025년도 집행액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집행액임.

자료: 헌법재판소

- 2025년도의 경우 346억 9,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 중 해당연도 9월까지 260억 6,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약 75.1%³⁾ 집행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등으로 2025년도에는 약 8억 1,300만원(2.3%)의 불용액이 발생할

1)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3개월), 사무차장(10개월) 직위의 공석, 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함.

2)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3) 9월까지 명절휴가비(연 2회), 정근수당(연 2회), 성과상여금(연 1회) 등이 모두 집행되어 3분기까지의 집행률이 75%를 넘는 것으로 보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4).

< 최근 5년 인건비 예산 사유별 불용액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합계	헌법재판관 겸임	휴직·퇴직 등 결원	명퇴수당 집행잔액	고위직 보수동결	기타
2021	31,280	29,535	2,113	274	1,664	17	100	58 (연가보상비)
2022	31,280	29,813	1,424	257	957	—	153	57 (연가보상비)
2023	31,860	30,995	865	257	566	—	—	42 (연가보상비)
2024	33,533	32,202	1,331	257	813	260	—	1 (연가보상비)
2025 (추정)	34,692	33,879	813	120	693	—	—	—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의 2026년도의 인건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6,100만원(1.9%) 증액된 353억 5,300만원으로, 2026년 공무원보수 처우개선율이 3.97%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2024년도 인건비 불용률(4%) 등 연례적인 인건비 과다불용에 따른 집행 내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26년도의 인건비 집행액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헌법재판소의 2025년도 인건비 예상 집행액(338억 7,900만원)에 공무원보수 처우개선율 3.97%를 가산하면 352억 2,400만원⁵⁾이 나오

4) 2024년 인건비 예산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경 8억 5,900만원의 불용액을 추정하였으나(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조), 2024년 결산 시 불용액은 13억 3,100만원으로 2025년도 인건비 예산 불용액 또한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임.

는데, 이는 2026년도 인건비 예산안 353억 5,300만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2026년에는 인력 증원 및 중요 직위에 대한 공석 미발생 등으로 2025년에 비해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6년도 헌법재판소의 정원 증가는 8인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예산 소요가 있음⁶⁾.

< 2026년도 헌법재판소 정원 증가 내역 >

(단위: 명)

연도	정원	세부내용
2025	356	—
2026	364(+8)	헌법연구관 5, 5급(전산직) 2, 전문경력관 다군 1

자료: 헌법재판소

- 또한, 2026년도에는 헌법재판관 등 중요 직위에 대한 공석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⁷⁾, 헌법연구관의 공보관 겸임 해제에 따라 이에 대한 인건비 불용액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므로⁸⁾ 이에 따라 2025년도에 비해 추가 예산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그 외에는 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등이 인건비 불용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 등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2026

5) 해당 금액은 각주 4)와 같이 2025년도 불용액도 과소추정된 경우라면 이에 비례하여 적어질 것임.

6) 헌법재판소는 증원인력에 대한 대략적인 인건비 소요예상액은 5억 5백만원이나, 2026년도 예산안에는 2억 9,900만원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함(다만, 채용시기, 채용된 인원의 경력산정기간 및 호봉 등에 따라 소요예상액은 차이가 있음).

7) 2026년에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관은 없음(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의 기간에 1인, 4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기간에 2인의 헌법재판관 공석이 있었음).

8) 그동안 비서실장(2007년부터), 공보관(2008년부터)을 헌법연구관이 겸임하고 있었으나, 공보관의 경우 2025년 7월 보임으로 변경하여 겸임을 해제하였고 현재, 비서실장만 헌법연구관이 겸임하고 있음.

년도 휴직·퇴직 인원은 2025년도와 유사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예산 소요는 2025년도와 유사하거나 일부 감
소할 것으로 보여짐.

< 최근 5년 헌법재판소 휴직 및 퇴직 인원 >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휴직	퇴직	휴직	퇴직	휴직	퇴직	휴직	퇴직	휴직	퇴직
헌법연구관	8	3	15	1	13	6	12	3	13	3
일반직공무원	20	16	19	22	25	23	26	25	19	14

* 휴직은 해당 연도 중 휴직시기가 있는 총 인원

* 2025년은 1월부터 9월까지의 해당 인원

자료: 헌법재판소

- 따라서, 2026년도의 인건비 예산안은 헌법재판소의 인력 구성 및 운
영 상황 등을 반영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불용
률은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예산이고, 그
간 헌법재판소는 인건비 예산과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과도한 불용
이 발생한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으므로 이전 연도의 과다
불용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인건비 예산의 집행시 동
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정 집행률을 확보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⁹⁾.

9) 헌법재판소의 경우 전체 세출예산(621억 900만원) 중 인건비 예산(353억 5,300만원)의 비중이 56.9%로 매우 높음.

2. 본부기본경비(1011-25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본부기본경비’ 사업은 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연례
· 반복적인 소규모 운영 경비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1,900만원(4.6%) 증액된 72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본부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부기본경비	6,697	6,955	7,274	319	4.6

자료: 헌법재판소

나. 상용임금 집행을 개선 필요

- 본부기본경비 사업의 세목인 상용임금(110-03)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 7. 20.)에 따른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900만원(8.6%) 증액된 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본부기본경비 사업 상용임금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부기본경비	708	803	872	69	8.6

자료: 헌법재판소

- 2026년 헌법재판소의 상용임금 대상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¹⁰⁾(이하 “민간근로자”라 함)의 정원은 2025년과 동일한 22명으로, 2025년 9월 현재 3명의 결원이 있어 현원은 19명임¹¹⁾.

< 헌법재판소 상용임금 대상 민간근로자 현황 >

(2025년 9월 말 기준)

구분	사무	운전	조리	사진·영상	물품관리	전산·정보화	사서	기록물관리
인원	6명	4명	2명	2명	1명	1명	2명	1명
합계	19명(무기계약직 근로자 16명, 기간제 근로자 3명 ¹²⁾)							

자료: 헌법재판소의 자료를 편집

- 최근 상용임금 예산의 불용률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치가 8.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¹³⁾, 상용임금에서의 불용액은 퇴직 또는 휴직으로 인한 민간근로자의 결원 기간에 따른 보수 및 수당 등의 미지급이 주된 원인임.

10) 헌법재판소는 민간근로자를 최초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1년 이상) 계속 근무 후 심사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있음.

11) 현재(2025. 10. 22.) 조리 업무 1명, 사무 업무 1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임.

12) 기간제 근로자 3명 중 2명은 현재 휴직 중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임.

13) 2025년의 경우 9월 말까지 예산현액 대비 62.5% 지급되었음.

< 최근 5년 본부기본경비 사업 상용임금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2021	519	519	519	408	111	21.3
2022	707	707	707	620	87	12.3
2023	722	722	722	664	58	8.0
2024	779	779	779	708	71	9.1
2025. 9.	803	803	803	502	-	-

자료: 헌법재판소

- 민간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연말 기준 현원이 항상 정원보다 부족한 점, 2022년 말 현원 19명(정원 21명)에서 2023년도 채용은 9월 1일, 9월 19일에 이루어진 점, 2025년 7월 1일 현원 19명(정원 22명)이 2025년 9월 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근로자가 퇴직할 시 상당 기간 결원이 유지되고 있음¹⁴⁾.

< 2021년 이후 상용임금 대상 민간근로자 채용일·퇴직일 >

연도	채용일	퇴직일	12. 31. 기준 정원 및 현원	비고
2021	-	1월 1일(1명) 7월 1일(1명)	정원: 21명 현원: 17명	현원에 휴직인원 포함
2022	3월 1일(2명) 11월 1일(2명)	9월 19일(1명) 12월 1일(1명)	정원: 21명 현원: 19명	
2023	9월 18일(1명) 9월 25일(1명)	9월 1일(1명) 9월 19일(1명)	정원: 21명 현원: 19명	
2024	5월 1일(1명)	2월 17일(1명)	정원: 22명 현원: 20명	
2025. 9.	4월 21일(1명) 7월 1일(1명)	1월 1일(2명) 3월 8일(1명)	정원: 22명 현원: 19명	

자료: 헌법재판소의 자료를 편집

14) 다만, 운용 업무가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 퇴직에 따른 정확한 결원 기간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2021년 이후 매년 휴직 인원이 1명 이상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대체인력을 운용하지 않거나 적시에 채용하지 않아 상당 기간 결원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음¹⁵⁾.

- 민간근로자 C의 경우 2년 동안 휴직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운용하지 않았음¹⁶⁾.

< 2021년 이후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현황 >

대상	휴직 기간	대체인력 채용 기간
A	2020년 11월 4일 ~ 2021년 3월 31일 *2023년 7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2023년 8월 1일 ~ 2025년 9월 말 현재
B	2020년 11월 8일 ~ 2022년 11월 7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7일 2025년 1월 1일 ~ 2023년 10월 31일	2025년 1월 20일 ~ 2025년 9월 말 현재
C	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 출산휴가 기간 포함

자료: 헌법재판소의 자료를 편집

□ 헌법재판소의 상용임금은 민간근로자 정원 22명에 대한 평균적인 기본급과 수당 등¹⁷⁾에 따라서 편성되어진 예산으로, 퇴직 및 휴직으로 인한 결원 기간을 고려할 때, 감액조정 등 불용액을 줄이고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 휴직사유는 세 명 모두 육아휴직으로, 민간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음.

16)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가능 기간(최대 3년) 내에서 분할 신청이 가능하여 최초 휴직 시점에는 복직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종료 시점에 연장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아 대체인력 채용 여부 결정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17)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임.

- 헌법재판소는 여러 부서에서 민간근로자에 대한 증원을 요청하고 있어 2026년에는 추가 채용을 통해 정원인 22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할 예정으로, 예산안이 감액조정될 경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상용임금 세목은 타 비목으로부터의 자체전용이 제한되어 있어(기획재정부 승인 필요) 예산 부족 시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불용에 따른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하, 결원에 따른 현업근로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민간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근로자의 휴직·퇴직 시 신속한 채용 절차를 운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유지 필요성 검토 필요

□ 헌법재판소는 2026년 본부기본경비 사업 내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세목에 기타요금 및 부담금 등¹⁸⁾ 내역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8%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2,549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일정 수 이상의 민간기업에 대하여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24년 이후 의무고용률 공공 3.8%, 민간 3.1%)¹⁹⁾ 장애인 고용 인원

18) < 헌법재판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

[단위 : 천원, 1\$]

2026년 예산안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02]공공요금및제세		864,662	
5. 행정관리국			
가. 기관운영지원			
8) 기타요금 및 부담금 등	25,485,000원=	25,485	

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의무고용 인원 미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²⁰⁾.

-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 미충족분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함.

□ 헌법재판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2024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여 2025년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자 헌법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의무를 적극 이행하여 대상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임.

< 2021년 이후 헌법재판소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 >

(단위: 명, 천원)

연도	정원*	의무 고용률	의무고용 인원	장애인 공무원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고용부담금 납부액***
2021	330	3.4%	12	11	3.33%	—
2022	337	3.6%	13	11	3.26%	12,734
2023	343	3.6%	13	14	4.08%	26,748
2024	348	3.8%	14	14	4.02%	18,733
2025. 10월 말	352	3.8%	14	14	3.98%	—

* 2020년부터는 전년도 정원 기준 적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20. 12. 10. 시행)]

** 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 1명은 2명으로 산정함

*** 전년도 의무고용미달에 대한 부담금(전액 일시납부 공제액 제외한 실 납부금액)

자료: 헌법재판소

- 이에 해당 예산안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에 소속 장애인 공무원 1인이 퇴직할 예정으로 해당 기간까지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2027년도 1월에 다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 해당 예산안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6년도에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2027년 1월에 납부하여야 하는바,

2027년 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의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 채용절차를 통해 기간 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1011-25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사업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인 소규모 운영 경비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00만원(2.3%) 증액된 4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412	426	436	10	2.3

자료: 헌법재판소

나. 집행실적을 고려한 유류비 예산 편성 필요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사업의 세목인 ‘유류비(210-08)’는 헌법 재판연구원 공용차량의 유류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사업 유류비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3,948	6,212	6,212	-	-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연구원은 2대의 업무용 차량을 운용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가솔린) 및 가솔린 차량임.

< 헌법재판연구원 업무용 차량 현황 >

차종	연료	배기량	탑승 가능인원	용도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솔린, 하이브리드	2,359	5	업무용
스타렉스	가솔린	2,497	11	업무용

자료: 헌법재판소

- 최근 5년 유류비 세목의 집행액을 살펴보면 매년 284만원에서 489만원 수준이며, 2025년의 경우 1월부터 9월까지 집행분의 1/3만큼 가산하여 전체 집행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집행액을 예상해보면 약 22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부진함.

- 헌법재판연구원의 유류비 예산은 최근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300만원 감액(11,212천원→9,212천원), 2025년도 3백만원 감액 (9,212천원→6,212천원) 편성하였음.

< 최근 5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유류비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예산액	9,390	9,390	11,212	9,212	6,212
집행액	2,836	4,893	4,353	3,948	1,652
집행률	30.2	52.1	38.8	42.9	26.6

자료: 헌법재판소

- 유류비는 지출규모나 방법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고정적 성격의 비용이나, 국제가격, 환율, 유류세 등의 변동에 따라 그 가격이 영향을 받아 집행액의 변동 여지가 있는 예산인데, 최근 5년 주유소 휘발유값이 가장 높았던 2022년도의 집행액이 489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2026년도에 편성된 600만원의 예산안도 과다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짐.

< 최근 5년 휘발유(주유소) 가격 추이 >

(단위: 천원, %)

구 분	2020년 평균	2021년 평균	2022년 평균	2023년 평균	2024년 평균
가격	1,381.57	1,590.46	1,812.39	1,643.00	1,653.23

* 2024년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의 평균 가격임.

자료: 대한석유회 홈페이지(<https://www.petroleum.or.kr/statistics/list>)

-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의 경우, 최근 수

년간의 이·전용, 불용 등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유류비 예산안은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소요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¹⁾.

21) 2026년도 예산안 621만원 대비 최근 5년 최대 집행액이 489만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국선대리인보수등(1031-30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선대리인보수 등 사업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충실한 변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보다 심도 있는 변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1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600만원(△4.7%)이 감액되었음.

< 2026년도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B-A)/A
국선대리인보수등	111	127	121	△6	△4.7
국선대리인보수	100	109	109	—	—
참고인 연구비 등	11	18	12	△6	△33.3

자료: 헌법재판소

나. 국선대리인 사건의 선임률 및 인용률 제고 등 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 국선대리인보수사업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헌법재판사건 145건에 대하여 평균 75만원의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전제로 1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국선대리인보수사업의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9,000	○ 일반수용비(210-01): 109,000천원 가. 국선대리인보수: 750천원×145건= 109,000천원	109,000	○ 일반수용비(210-01): 109,000천원 가. 국선대리인보수: 750천원×145건= 109,000천원

자료: 헌법재판소

- 동 사업은 변호사 강제주의의 제도²²⁾ 하에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에 사업 추진의 목적이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70조²³⁾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22)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선임기준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선정결정 사실을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수행한 이후 재판부가 종국결정을 하면 국선대리인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음.

< 국선대리인 보수 사업 집행 절차 >

추진절차	시행주체	관련규정
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신청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		
② 국선대리인 선정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2항, 제3항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 국선대리인 선임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2조, 제3조
↓		
③ 청구서 등 제출	국선대리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5항
↓		
④ 선 고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제1항
↓		
⑤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6항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9조 -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4조 - 국선대리인 보수지급에 관한 재판관회의 의결

자료: 헌법재판소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 그런데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에 따른 선임률 현황을 살펴보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건수는 2020년 1,308건, 2021년 1,096건, 2022년 1,003건, 2023년 884건, 2024년 1,057건으로 해마다 약 1,000여 건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루어진 건수는 2020년 159건, 2021년 157건, 2022년 152건, 2023년 105건, 2024년 127건으로 선임 사건 건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에 따른 선임률 현황 >

(단위: 건, %)

년도	신청			계 A+B+C (A+C)	선임 A	결정건수 가각·각하			취하	미제	선임률
	계	이월	금년			소계 B+C	가각·각하				
							청구부적법 B	청구부적법 외 C			
2020	1,308	75	1,233	1,227 (180)	159	1,068	1,047	21	15	66	13
2021	1,096	66	1,030	999 (175)	157	842	824	18	10	87	16
2022	1,003	87	916	934 (165)	152	782	769	13	19	50	16
2023	884	50	834	816 (114)	105	711	702	9	12	56	13
2024	1,057	56	1,001	997 (135)	127	870	862	8	10	50	13

자료: 헌법재판소

- 한편,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을 살펴보면, 2020년 사선대리인 15.2%, 국선대리인 11.2%, 2021년 사선대리인 12.3%, 국선대리인 9.6%, 2022년 사선대리인 17.1%, 국선대리인 9.1%, 2023년 사선대리인 11.9%, 국선대리인 7.6%, 2024년 사선대리인 12.3%, 국선대리인 10.4%로 사선대리인이 대리한 사건의 인용률이 국선대리인이 대리한 사건의 인용률보다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사선대리인 및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 인용률 비교 >

(단위: 건, %)

연도	합계		사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고	인용(인용률)	선고	인용(인용률)	선고	인용(인용률)
2020	491	70(14.3)	375	57(15.2)	116	13(11.2)
2021	488	57(11.7)	373	46(12.3)	115	11(9.6)
2022	397	60(15.1)	298	51(17.1)	99	9(9.1)
2023	625	68(10.9)	481	57(11.9)	144	11(7.6)
2024	717	86(12.0)	602	74(12.3)	115	12(10.4)

자료: 헌법재판소

- 이러한 국선대리인 신청 사건의 증가 추이,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사건을 수행하는 국선대리인에 대한 적절한 활동 환경 조성 및 국선대리인 신청 사건에 대한 선임률, 인용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기준에 따르면, 평균 지급단

가인 75만원(기본보수 60만원 +기타보수 15만원)은 2010년 이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 면담, 공개변론 출석, 사건의 난이도, 서면의 충실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²⁴⁾할 수 있는 보수 상한액(200만원) 또한 2009년 이후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선대리인 사업 보수 지급기준 변동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보 수 액					지급 한도
	기본 보수	증액보수(재량사항)				
		심판서류 (횟수, 충실도)	기타보수 (면담, 난이도, 직무내용 등)	출석보수		
				변론 등	헌법연구관 조사기일	
2001	120	－	120	120	－	1,500
2002	150	－	150	150	－	1,500
2003	230	－	230	230	－	1,500
2004~2008	280	－	280	280	－	1,500
2009	500	200	150	500	－	2,000
2010~2018	600	200	150	500	－	2,000
2019~	600	200	150	500	300	2,000

자료: 헌법재판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동 사업이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변호사 강제주의 제도 하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통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에 사업추진의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 신청에 따른 선임료 및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료를 제고

24)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9조(보수) ①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판관회의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청구인의 수, 변론의 회수, 기록의 등사나 청구인 면담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약 16년째 고정된 국선대리인의 보수 현실화, 소송 수행상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동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적정 예산 확보 및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은 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변론에서 보다 심도 있는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33.3%인 600만원이 감액되어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은 헌법재판 변론 절차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법적 쟁점 및 실체적 진실과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도 그 목적이 있는바, 당사자의 참고인 추천에 따라 재판부가 참고인 지정 결정을 하면 참고인이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변론에서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참고인 연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음.

<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 집행 절차 >

추진절차	시행주체	관련규정
① 참고인 추천요청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② 참고인 지정결정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③ 의견서 제출(서면) 및 진술(변론) ↓	참고인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④ 참고인연구비 지급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37조 -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 - 헌법재판소 증인 등의 일당과 참고인에 대한 연구비 지급기준에 관한 재판관회의 의결 제3호

자료: 헌법재판소

-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2026년도 산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참고인 2명씩 총 4건의 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진술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참고인 2명씩 총 6건의 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진술을 전제로 편성된 2025년도 예산에 비해 감액 편성된 것임.

<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000	○ 일반수용비(210-01): 18,000천원 가. 참고인 연구비 등: 1,500천원×2명×6회=18,000천원	12,000	○ 일반수용비(210-01): 12,000천원 가. 참고인 연구비 등: 1,500천원×2명×4회=12,000천원

자료: 헌법재판소

- 이는 최근 5년간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 예산에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헌법재판소는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참고인 2명씩 총 6건의 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진술을 전제로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2022년을 제외하고는 참고인 지정 건수가 2021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에 그쳤고, 2025년의 경우도 9월 현재 집행 건수는 0건(집행률 0%)로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최근 5년간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건, %)

연도	예산액	참고인 지정 사건 수	집행액	불용액(불용률)
2021	18	2	6	12(67)
2022	18	8	25	△7(△39)
2023	18	2	6	12(67)
2024	18	3	11	7(39)
2025.9.	18	0	0	18(100)

자료: 헌법재판소

-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헌법재판소의 변론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8회, 2024년 13회, 2025년 9월 현재까지 총 29회의 변론이 개최되었는바,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이 집중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참고인 지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 변론 사건 및 탄핵심판 사건 변론 횟수 >

(단위: 건, %)

연도	총 변론 횟수	탄핵심판 사건 변론 횟수(비중)
2023	8	4(50)
2024	13	7(54)
2025. 9.	29	25(86)

자료: 헌법재판소

-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추진 목적이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변론을 통해 참고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참고인의 의견을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는 점과 헌법재판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참고인 활용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은 전년도에 준하는 수준으로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는 향후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변론 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 처리사건의 양적 증가와 심판대상
상의 다양화 및 전문화 경향에 대응하여 재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
원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충실한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고 국
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내역사업들로 구성
되어 있음.

- (헌법재판업무지원) 헌법재판 사건처리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
를 위한 연구부 부별 토론, 연구회 활동 등 지원
-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등) 국내·외 판례에 대한 검토·분석 및
헌법재판 관련 대내·외 업무협의 등
-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록물 탈산처리 및 정리 등
-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등 관
련 연구주제의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기록 수집 및 총서 발간) 역대 헌법재
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구술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책자로 발간

-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5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7,400만원(△11.0%)이 감액되었음.

< 2026년도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B-A)/A
재판활동운영지원	738	671	597	△74	△11.0
헌법재판업무지원	241	267	242	△25	△9.4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등 운영지원경비	221	221	199	△22	△10.0
기록물 관리 및 보존	53	143	64	△79	△55.2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9	10	11	1	10.0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기록 수집 및 총서 발간	30	30	81	51	170.0
기록물보존서고 RFID 설비 구축	185	—	—	—	—

자료: 헌법재판소

나.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의 발간 부수 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 가능성 검토 필요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사업은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구술기록을 수집하여 이를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보다 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사업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25년도 예산의 경우 25,000원씩 2세트의 구술총서를 600부 발간하는 것을 전제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25,000원씩 2세트의 구술총서 700부를 발간하는 것을 전제로 3,5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산출하였음.
- 2026년 구술총서 발간을 위한 구술 대상자는 8명(4기 재판소장 1명, 재판관 7명)임.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사업의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000	○ 일반수용비(210-01): 30,000천원 가.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25천원×2세트)×600부=30,000천원	81,000	○ 일반수용비(210-01): 35,000천원 가.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25천원×2세트)×700부=3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46,000천원 가.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기록 수집: 46,000천원×1식=46,000천원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런데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사업의 연혁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된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기록 수집 사업의 집행이 2022년에 마무리되면서 수집된 구술기록물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을 전제로 2023년도 예산부터 편성되기 시작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위 발간 사업은 당초 구술기록 수집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 사업이었음.
- 당시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기록 수집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목적은 헌법재판소 주요 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는 것이었음.

< 2016년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계획서 내용 >

8

향후 계획

□ 기수별 재판관 순으로 매년 구술채록 시행 예정

- 구술채록 고사, 건강 등 기타 사유로 구술대상자 변동 가능

※ 구술기록 수집의 필요성에 따라 매년 계속사업으로 '구술채록 사업' 예산안 반영

□ 헌법재판소사이버역사관 및 향후 설치될 상설 전시관 전시 등에 활용

- 수집된 구술기록은 공개 및 활용여부를 검토한 후 각종 전시에 활용하고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자료: 헌법재판소

- 실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역사관 내 구술기록관을 마련하여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구술기록을 영상 또는 녹취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사업은 동일한 구술기록을 발간물로 편찬하는 형태로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를 발간물의 형태로 편찬하는 것이고, 2026년도에 발간을 계획하고 있는 구술대상자인 4기 재판부의 구술 기록 역시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제공되고 있는 상황임.

< 헌법재판소 사이버역사관 구술기록관 >

구술기록관

홈

구술기록관

4기 재판부

—

+

🔍

📄

< 3기 재판부

4기 재판부

사무처 >



이강국 전 재판소장
2007. 1. 22. ~ 2013. 1. 21. 🕒 02: 37: 13



이공현 전 재판관
2005. 3. 14. ~ 2011. 3. 13. 🕒 01: 51: 41



김희옥 전 재판관
2006. 9. 15. ~ 2010. 12. 31. 🕒 01: 24: 23



이동흡 전 재판관
2006. 9. 15. ~ 2012. 9. 14. 🕒 02: 17: 26



민형기 전 재판관
2006. 9. 15. ~ 2012. 9. 14. 🕒 02: 40: 39



목영준 전 재판관
2006. 9. 15. ~ 2012. 9. 14. 🕒 02: 41: 02



송두환 전 재판관
2007. 3. 23. ~ 2013. 3. 22. 🕒 03: 59: 03

□ 한편,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의 배부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발행한 600부 중 176부를 대학 도서관에 배부하여 가장 높은 비중(29.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내부의 각 부서, 헌법재판연구원, 도서관 등에 154부(25.7%)를 배부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에 총서를 비치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배부처(2024년 기준) >

(단위: 권)

배부처		주요인사 구술총서	비고
내부	각 부서, 연구관, 도서관 등	123	
	(재고)	(31)	
외부	국회	23	
	법원·검찰	112*	각 2부
	정부기관	40	
	대학 도서관	176*	각 2부
	법조계 등	95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법학원 자료실 각 지역 지방변호사회 등
총 발행수		600	

* 법원·검찰 각 소속기관 및 대학도서관은 2부 기준임(따라서, 실제 배부처는 법원·검찰 50곳, 대학도서관 88곳임)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의 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 사이버역사관 구술기록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점, 구술총서 배부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술총서 발간 후 헌법재판소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한 점, 최근 정보의 소비형태, 종이의 생산·소비를 지양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발간물 부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2026년 예산안에서 전년(600부)보다 100부 증가한 700부의 구술총서를 발간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5년 구술총서 사업의 구술 대상자는 5명이었던 반면, 2026년도 구술총서 사업의 구술 대상자는 8명에 달하여 구술총서 분량(면수) 증가, 편집 비용 인상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으로 발간부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600부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25년 및 '26년 구술총서 발간대상자 비교 >

구분	'25년 발간(11월 예정)	'26년 발간
구술 대상자	5명 (3기 재판소장 1명, 재판관 2명, 전직 사무처장 2명)	8명 (4기 재판소장 1명, 재판관 7명)
분량(면수)	약 500매 (제5권 250매, 제6권 250매)	약 700매 (제7권 300매, 제8권 400매)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른 경우 예산안 산출근거를 면밀하게 산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재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구술총서 발간 부수를 전년도와 동일(600부)하게 유지할 필요성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에 대한 단가를 면밀하게 재산정하고, 구술총서 발간물 부수를 조정하여 예산의 절감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1033-303)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사업은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 등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역사업은 다음과 같음.
- (헌법재판연구활동) 중장기 과제, 심사기준의 개발, 주요쟁점에 대한 선행적 연구 등 헌법재판연구 수행
-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법학전문대학원 및 학회 등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 (헌법재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헌법재판 관련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외국의 헌법재판제도 이론과 실무경험을 공유
-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등)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및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헌법 교육에 대한 관심 유도
- (정보자료실 운영) 헌법재판연구 지원을 위한 법률자료 및 전자자료 구입
-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헌법재판소법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정리하여 재판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학문적인 연구 발전 및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 도모

-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18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900만원(△0.5%)이 감액되었음.

< 2026년도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B-A)/A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1,864	1,865	1,856	△9	△0.5
헌법재판연구활동	123	146	124	△22	△15.1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18	16	16	—	—
헌법재판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73	72	72	—	—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등	64	62	53	△9	△14.5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	1,488	1,488	1,488	—	—
정보자료실 운영	55	55	30	△25	△45.5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18	21	18	△3	△14.3
헌법재판연구원 청사보안	5	5	5	—	—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	—	50	50	100.0
사이버 강좌 재개발	21	—	—	22	100.0

자료: 헌법재판소

나.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사업 수행방식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사업은 「헌법재판소법」을 조문별로 그 규범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정리함으로써 재판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학문적인 연구 발전 및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사업의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50,000	○ 일반연구비(260-01): 50,000천원 가.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50,000천원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석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2015년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를 최초로 발간 및 배포하였으며, 이후 별도로 개정판을 발간하지 않았는데, 동 사업을 기존 사업과 유사하게 2개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7년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을 발간하겠다는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음.

<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

연도	과제명	내용	비고
2026	2026년도 헌법재판소법 주석 연구용역	· 헌법소원심판 · 위헌법률심판 · 조직	2027년 발간 예정
2027	2027년도 헌법재판소법 주석 연구용역	· 총칙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 · 일반심판절차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동 사업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는 「헌법재판소법」의 조문별 의미, 관련 헌법재판 결정례 및 헌법소송절차 등을 다루고 있는 국내 유일한 주석서로서,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 및 국민들로 하여금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2015년 출간 이후 그간 축적된 법 개정사항 및 주요 결정례 등 내용을 개정판에 반영하여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그 사업 수행방식으로는 2015년 최초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발간 당시 외부 연구용역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만큼 개정판 역시 외부 연구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발간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사업의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사업 추진 필요성	· 「헌법재판소법」의 조문별 의미, 관련 헌법재판 결정례 및 헌법소송절차 등을 다루고 있는 국내 유일한 주석서 · 이해관계당사자 및 국민들에게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학계 연구 활성화 기여
‘26년도 예산(안)	· 5,000만원(일반연구비, 260-01)
사업 추진 계획	· 2026년 및 2027년 2개 연도 사업으로 추진 – 2027년 발간 목표
사업 수행 방식	· 외부 연구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수행
용역 결과물	· 국가기관(국회, 행정부 등) 및 대학에 배부, 홈페이지 개시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런데 주석서는 법률 조항을 해석하고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설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또한 「헌법재판소법」의 조문별 의미, 헌법재판 결정례 및 헌법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 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헌법재판 제도를 관장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재판연구원 내의 헌법연구관을 포함한 연구인력²⁵⁾이

25) 헌법재판연구원에 근무하는 헌법연구관은 5명, 연구인력은 16명(변호사 3명, 국외변호사 3명, 박사 8명, 석사 2명), 교수 2명(변호사 1명, 국외변호사 1명)임.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주석서 발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2015년)』에 기재된 헌법재판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주석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을 담은 책이 아니라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²⁶⁾.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헌법재판소가 동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을 하는 헌법상 기관인 점, 주석서가 헌법재판 절차에 관한 해설서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석서 발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 용역으로 수행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사업은 학계 교수 등을 활용하여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헌법연구관 등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개정판을 발간하는 방식보다 더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26) 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헌재법 주석서에는 ‘둘다 가능’”, 2024년 12월 25일자 기사, 연합뉴스, “헌재법 주석서, 탄핵사유 시점따라 정족수 달라져”, 2024년 12월 27일자 기사 등 참조

연구용역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 연구자가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위탁형 방식보다는 외부 연구자와 헌법연구관 등 내부 인력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공동연구형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⁷⁾).

27)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행정안전부)

- 위탁형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7. 해외연수(1034-304)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해외연수’ 사업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소 직원에게 외국 법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년 내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6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예산 대비 3,900만원(6.9%)이 증액되었음.

< 2026년도 해외연수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B-A)/A
해외연수	494	565	604	39	6.9
헌법연구관 장기해외연수	280	287	300	13	4.5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132	116	140	24	20.7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32	27	38	11	40.7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29	31	31	—	—
실무공무원 단기국외훈련	21	17	15	△2	△11.8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연수 과정	—	87	80	△7	△8.0

자료: 헌법재판소

나.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의 확대 필요성 및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의 유지 필요성 검토 필요

-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²⁸⁾’는 국외연수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헌법연구관 1인을 대상으로 외국의 기관, 대학 등에서 연수를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수용비(210-01) 및 국외교육여비(220-03)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3,814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예산 대비 1,093만원(40.2%)이 증액되었음.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2025년도 예산에 일부 감액되었던 국외교육여비를 실소요에 맞춰 현실화하였다고 설명함.

< 2026년도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합 계	31,525	27,212	38,140	10,928	40.2
일반수용비(210-01)	—	4,098	4,098	—	—
국외교육여비(220-03)	31,525	23,114	34,042	10,928	47.3

자료: 헌법재판소

28)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3조(국외연수의 정의 및 종류) ① “국외연수”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계발을 위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외연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연구관 국외장기연수
2. 헌법연구관 국외전문화연수
3.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 국외장기연수

< 2021년 이후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2021	26,996	39,168
2022	26,559	40,417
2023	27,002	47,439
2024	27,212	31,525
2025. 9.	27,212	38,071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는 선진 헌법재판제도의 체계적 습득 및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한 실무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6개월의 기간 동안 실시됨.

< 2021년 이후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실시 현황 >

연도	대상자	직급(직위)	연수기간	연수국가 및 기관
2021	ㄱ○○	선임헌법연구관	21. 6. 25. ~ 21. 12. 24.	미국 UC어바인 로스쿨 한국법센터
2022	ㄴ○○	선임헌법연구관	22. 8. 30. ~ 23. 2. 28.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
2023	ㅇ○○	선임헌법연구관	23. 1. 10. ~ 23. 7. 9.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
2024	ㄱ○○	선임헌법연구관	24. 7. 12. ~ 25. 1. 11.	영국 퀸메리 대학 로스쿨 커머셜로 연구센터
2025	ㄴ○○	선임헌법연구관	25. 5. 16. ~ 25. 11. 15.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로스쿨 한국법센터

자료: 헌법재판소

□ 이에 반해, ‘연임 헌법재판관 연수²⁹⁾’ 사업은 헌법연구관 경력 11년

29)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5조(연수허가) ①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이 2주 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하거나 관련 제도 등을 시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도 유사한 제도로 연임법관연수를 운영하고 있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40조 (연임법관연수) ① 법원행정처장은 연임한 법관

차, 21년차 등 해당 연도에 재임용된 헌법연구관을 대상으로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하거나 관련 제도 등을 시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외교육여비(220-03)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예산과 동일한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해당 연수는 연임 헌법연구관이 개별적으로 연수 국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매년 5명 정도의 연임 헌법연구관이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연수를 다녀왔음.

< 2026년도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외교육여비(220-03)	28,877	31,000	31,000	-	-

자료: 헌법재판소

< 2021년 이후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2021	40,206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
2022	34,362	30,618
2023	31,071	29,667
2024	31,000	28,877
2025. 9.	31,000	23,105

자료: 헌법재판소

에게 연수(이하 '연임법관연수'라 한다)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내규에 따르면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는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평균 2주 정도 시찰의 목적으로만 운영되어지고 있음.

< 2021년 이후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실시 현황 >

연도	대상자	직급(직위)	연수기간	연수목적	연수국가
2021	코로나19 확산으로 미 실시				
2022	ㄱㅇㅇ	선임헌법연구관	22. 6. 24.~ 22. 7. 3.	영국 대법원의 구성·권한과 스코틀랜드 대법원과의 관계 등 조사	영국
	ㄱㅇㅇ	선임헌법연구관	22. 7. 25.~ 22. 8. 3.	싱가포르의 정치제도 및 사법기관의 지위 및 역할 연구	싱가포르
	ㄱㅇㅇ	선임헌법연구관	22. 9. 15.~ 22. 9. 24.	이탈리아 헌법재판제도 등에 대한 심화 연구	이탈리아
	ㅇㅇㅇ	헌법연구관	22. 10. 8.~ 22. 10. 16.	영국의 사법심사의 최근 동향 조사	영국
	ㅂㅇㅇ	헌법연구관	22. 12. 25.~ 23. 1. 2.	태국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제도 등 연구	태국
2023	ㅅㅇㅇ	선임헌법연구관	23. 7. 22.~ 23. 7. 31.	샌디에고 법원, 배심정 등 방문을 통한 사법제도 전반 시찰 및 법학 도서관, 로스쿨 등 방문을 통한 자료조사	미국
	ㄱㅇㅇ	선임헌법연구관	23. 8. 5.~ 23. 8. 14.	프랑스 주요 헌법기관 방문을 통한 프랑스 사법제도 전반 및 헌법재판제도 조사	프랑스
	ㄱㅇㅇ	선임헌법연구관	23. 9. 27.~ 23. 10. 4.	일본 최고재판소 및 헌법재판제도 조사·연구	일본
	ㅈㅇㅇ	선임헌법연구관	23. 11. 1.~ 23. 11. 10.	호주 연방헌법, 주 대법원 및 지방법원의 구성·기능에 관한 조사	호주
	ㄱㅇㅇ	선임헌법연구관	23. 9. 23.~ 23. 10. 2.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관한 연구	미국
2024	ㄴㅇㅇ	선임헌법연구관	24. 6. 12.~ 24. 6. 21.	스위스 연방제도 및 연방사법제도, 연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조사	스위스
	ㅂㅇㅇ	선임헌법연구관	24. 8. 19.~ 24. 8. 28.	유럽연합의 구속력 있는 법령의 이행절차, 침해소송(infringement proceedings) 이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연도	대상자	직급(직위)	연수기간	연수목적	연수국가
	○○○	선임헌법연구관	24. 9. 23.~ 24. 10.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구성과 활동 및 국제사회의 인권보호·증진 현황을 살핌으로서 우리 헌법재판의 인권보호 역할에 시사점 발견	미국
	ㄱ○○	선임헌법연구관	24. 10. 25.~ 24. 11. 3.	태국의 헌법재판제도 및 사법제도에 대한 조사	태국
	○○○	선임헌법연구관	24. 12. 31.~ 25. 1. 9.	일본의 헌법재판제도와 일본 최고재판소 구성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일본
2025	○○○	선임헌법연구관	25. 5. 3. ~ 25. 5. 12.	미국 연방주의 및 지방자치제도, 관련 캘리포니아 법제 및 주헌법, 주헌법에 따른 위헌심사 등에 관한 조사	미국
	ㄱ○○	선임헌법연구관	25. 6. 5. ~ 25. 6. 14.	프랑스의 헌법재판제도 및 사법제도 연구	프랑스
	ㅎ○○	선임헌법연구관	25. 7. 26. ~ 25. 8. 3.	영국 인권법 하에서의 규범통제의 양상 등 조사	영국

자료: 헌법재판소

□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는, 해외연수 사업의 목적이 “외국 법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능력 및 직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헌법재판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함이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연구관이 연임 이후의 임기에 헌법재판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업무를 떠나 새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

- 참고로,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해당 연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법원의 경우에도 국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연임법관 연수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시정요구를 받은바 있음.

구분	연도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헌법재판소	2025 (2024 회계연도)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에 대한 관리 필요	사업명	해외연수(1034-304)	제도 개선
			시정요구사항	헌법재판소는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에 있어 해당 사업이 그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연수보고서에 대한 내규를 보완할 것	
대법원	2023 (2022 회계연도)	목적에 맞는 해외연수 국가 선정 및 연수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사업명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제도 개선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연임법관 해외연수 방문지 중 튀르키예나 베트남, 케냐 등 국가가 포함된 사례와 관련하여 사법제도 선진화 및 발전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향후 업무와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적은 국가에 대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연수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비용반환을 비롯한 벌칙을 부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사업과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의 예산 규모가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³⁰⁾, 해당 예산을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사업으로 편성하여, 참여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의 수를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확대³¹⁾함으로써 헌법연구관이 해외 기관에서 연수하거나 대학의 방문 연구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외국 법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능력 및 직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헌법재판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해외연수 사업의 목적 달성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임.

30)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사업(3,800만원)과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3,100만원)의 2026년도 예산 규모는 비슷한 수준임.

31) 2024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연구관들의 해외연수가 영미권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를 확대하는 경우 비영미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2024. 10. 11.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 헌법재판소는 한정된 예산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의 확대 필요성 및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재판자료확충(1035-306)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재판자료확충’ 사업은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등을 제작·발간하고,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외국판례, 학술자료 등을 번역·발간하려는 것으로, 다음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을 번역하여 해외에 널리 알리고, 외국 유관기관 등과의 상호협력·교환자료로 활용
 - (판례집 발간) 판례의 체계적인 축적을 위해 매월 선고사건 중 주요 사건의 결정문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록
 - (결정해설집 발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해당 결정에 대한 해설 및 입법례 등을 수록하여 발간
 - (판례요지집 발간) 판례집에 수록된 결정요지의 핵심 내용을 법조문·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가제식으로 발간
 -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헌법재판소의 주요 행정사항 및 결정에 대한 대국민 공개
 - (헌법논총 발간) 헌법·헌법재판 관련 논문의 공모 및 논문집 발간을 통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하고, 연구성과를 헌법재판에 활용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발전 도모
 -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외국판례, 학술자료

등을 번역·발간함으로써 헌법재판 지원 강화 및 국제교류자료 확충

- (도서관 자료 구입) 심판 및 연구업무 적시 지원과 도서관 법률정보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도서관 자료의 지속적 구입

-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헌법재판소장 임기만료 예정에 따라 재임 중 발표한 각종 연설문 등에 담긴 경륜과 철학, 헌법이론 등을 되새기고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나아갈 방향의 길잡이로 활용

□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600만원(11.9%)이 감액된 3억 4,0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재판자료확충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재판자료확충	460	386	340	△46	△11.9
영문 헌법재판소 판례집 발간	8	7	7	-	-
헌법재판소판례 요지집 추록 발간	14	11	11	-	-
헌법재판소결정 해설집 발간	7	9	9	-	-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37	37	37	-	-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34	32	47	15	46.9
헌법논총 발간	15	17	17	-	-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49	42	42	-	-
도서관자료 구입	266	226	170	△56	△24.8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16	4	-	△4	△100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오디오북 서비스 제공	15	-	-	-	-

자료: 헌법재판소

나.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관련 적정 발간부수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필요

- 재판자료확충 사업 내 헌법재판소공보³²⁾ 발간 사업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행정사항, 법령 및 전월 주요판례 등을 유관기관 및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헌법재판소 공보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00만원(46.9%) 증액된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33,737	32,126	46,700	14,574	46.9

자료: 헌법재판소

- 예산안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헌법재판소공보의 발간 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법원의 법원공보 및 판례공보에 비해 헌법재판소공보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내외부 의견을 반영하여 글자 크기 및 줄 간격 등을 법원공보 및 판례공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예산안 산출에서의 발간 면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함.

32) 연 혁: 1993년(공보 제1호, 초간본 발간) ~ 2025년(공보 제342호)
발행부수: 500부
발간주기: 월 1회(매월 20일)

<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관련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126	○ 일반수용비(210-01): 32,126천원 가. 발간비: 28원×176P×500부×12회=29,568천원 나. 공보표지 제작: 6,000원×500조=3,000천원 다. 단수조정: △442천원	46,700	○ 일반수용비(210-01): 46,700천원 가. 발간비: 28원×260P×500부×12회=43,680천원 나. 공보표지 제작: 6,000원×500조=3,000천원 다. 단수조정: △20천원

자료: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II-1(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공보의 글자크기를 9.5pt→10pt, 줄 간격을 150%→180%, 문단 가격을 0→3pt로 조정하게 되면 기존 대비 발간 면수가 약 45% 증가하므로 이를 근거로 발간비에서 약 45% 증액되었다고 설명함.

< 헌법재판소 및 법원 공보의 글자크기 등 비교 >

항목	헌법재판소 공보	법원 공보
글씨체	신명조체	윤명조
글자 크기	9.5	10
줄 간격	14.3pt(약 150%)	180%
문단 간격	0pt	3pt
단 수	2단	1단
발간 횟수	월 1회(매월 20일)	월 2회(1일, 15일)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공보의 가독성을 높여 헌법재판 결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그동안 국회에서 재판자료

확충 사업의 발간물들에 대한 집행부진 개선, 온라인배포 확대, 발간부수 축소 필요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를 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발행부수에 대한 검토 또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최근 재판자료확충 사업 관련 국회의 시정요구 내역 >

연도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2021 (2020 회계연도)	발간비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및 헌법논총 투고 활성화 필요	사업명	재판자료확충(1035-306)	제도개선
		시정요구 사항	헌법재판소는 재판자료 확충 사업의 예산 집행 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논 총의 경우 투고 장려 등을 통해 발간비 집행을 촉진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감축하는 방안 을 고려할 것	
2022 (2021 회계연도)	간행물 발간비의 연례적 불용 개선 및 과다한 발간량 축소 필요	사업명	재판자료확충(1035-306)	제도개선
		시정요구 사항	헌법재판소는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등 간행물 에 대한 필수적 수요를 재검토하여 그 물량을 최소화하고, 관련 예산의 과다한 불용률을 감 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2023 (2022 회계연도)	헌법재판소 발간물의 온라인 배포 확대 및 발간 예산 조정 필요	사업명	재판자료확충(1035-306)	제도개선
		시정요구 사항	헌법재판소는 발간물의 온라인 배부가 증가하 는 추세를 고려하여 희망하는 기관에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배부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소요에 맞 게 헌법재판소 책자 발간 예산을 조정할 것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 정보에 대한 전자 기기를 통한 소비 형태가 보편화된 점, 헌법재판소의 발간물들 또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열람·활용이 가능한 점, 종이 사용량 감소를 통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점, 헌법재판소 내부 배부수량 및 재고수량은 자체 조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이 인쇄물들을 점차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음³³⁾.

< 2025년 재판자료확충 사업의 발간물 배부처(예정) >

배부처	영문 판례집	판례 요지집	결정 해설집	판례집	공보 (1회12월)	논총
헌법재판소	156	92	143	147	147	133
(재고)	102	58	46	69	61	53
대학 도서관	21	89	105	88	91	106
국회	30	3	5	31	31	30
법원·검찰	2	16	35	34	32	24
정부기관	10	24	68	53	56	60
법조계	—	15	19	18	18	20
언론사	—	3	4	3	4	4
전직 주요인사, 재판소 소관위원회 외부위원 등	16	—	75	57	60	70
국외기관 (대사관 포함)	463	—	—	—	—	—
총 발행수	800	300	500	500 (1회당, 총2회)	500 (1회당, 총12회)	500

자료: 헌법재판소

33) 최근 5년(2021년~2025년) 헌법재판소공보의 발행부수를 살펴보면 매월 500부로 동일함.

- 헌법재판소는 예산안에 반영된 헌법재판소공보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페이지 수 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공보의 적정 발간부수에 대하여 검토하고 재고수량 등의 조정을 통해 일부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³⁴⁾.

34) 예를 들어, 내부 배부수량을 15부(147→132), 재고수량을 15부(61→46) 축소할 경우 280만원이 감액조정됨 [2,620.8천원(=28원×260P×30부×12회) + 180천원(=6,000원×30조)].

9.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1035-50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헌법재판 업무를 지원하고, 대국민 전자재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 주요 정보시스템 보완관제 및 침해 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
- (정보시스템 확충)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 등 헌법재판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헌법재판 업무 지원
-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전자헌법재판센터 및 심판사건처리시스템 등 내·외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기구축정보시스템 임차) 인프라 사업 리스 및 복합기 임차를 통한 운영 지원
- (일반운영 등) 전산소모품 등 구입 및 국가정보통신망 등 네트워크 회선 이용을 통한 정보시스템들의 사용 및 관리 지원

□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84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

비 9억 2,500만원(12.3%)이 증액되었음.

< 2026년도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B-A)/A
헌법재판정보화 (정보화)	6,310	7,499	8,424	925	12.3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보호	894	925	986	61	6.6
정보시스템 확충	1,628	2,494	3,068	574	23.0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1,987	2,191	2,468	277	12.6
기구축정보시스템 임차	1,570	1,677	1,602	△75	△4.5
일반운영 등	232	212	300	88	41.5

자료: 헌법재판소

나.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사업의 철저한 사업 및 집행 관리 필요

-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사업’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남통합청사 내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신규 데이터센터 목표모델 설계 및 이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5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사업의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533,000	○ 일반연구비(260-01): 533,000천원 {건설팅업무량(45.8 × 0.98 = 44.884) × 2025년 ISP 단가(11,290,936)} × 1.1(부가세 포함) × 0.957(할인률: 4.3%) ※ 산출근거: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가이드

자료: 헌법재판소

-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본청 내 공간을 사용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일반 건물 내 위치에 따른 전력, 통신, 공조 등 수용용량이 부족하여 구조적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강남통합청사(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헌법재판소 신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가중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정보화전략계획(ISP)³⁵⁾ 수립

35)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조직, 기관,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기술을 연

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헌법재판소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사업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사업 목적	· 가중되고 있는 헌법재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재판소 내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한계(전력, 통신, 공조, 소방 등 수용용량 부족) 극복을 위한 차세대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근거	· 강남통합청사 신축 계획 확정(청사 내 재판소 데이터센터 구축 포함) － 계획설계 완료('25. 4.) 및 중간설계 진행 중 ·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25.2.)에서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추진 의결
사업 주요 내용	· (환경분석) 내·외부 환경, 선진사례, 기술 동향 등 ICT 환경 분석 － 국내외 최신 데이터센터 기반시설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성 분석 － 최신 IT 기술 추세와 기술환경의 변화를 검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적용사례 분석 － 확장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서비스·인프라 아키텍처 적용사례 분석 · (현황분석) 내부 현황 및 기반시설·정보통신기술 현황 분석 － 헌법재판업무의 체계, 프로세스, 사용자 요구사항 등 분석후 현행 헌법재판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 － 기반시설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등 현행 인프라 아키텍처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 －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기반으로 벤치마킹 대상 선정 후 선진사례 조사·분석 진행 · (목표모델 설계) 과제별 이행방안 및 목표모델 설계 －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등 수립하고, 적용할 기술 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 수립 － 데이터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센터 역할 정의 및 조직·인력 구성안 등 중·장기 운영방안 수립

계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 (이행계획 수립) 중장기 이행계획 및 추진 로드맵 수립 - 개별 실행과제 정의 및 구체화, 중장기 발전 방안(로드맵) 제시 - 과제별 연관성 및 우선순위 분석 후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수립
기대 효과	· 강남통합청사 완공 시점('29년 예정)에 맞춘 데이터센터 적기 구축 · 확장성 및 운영 안정성이 확보된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능·성능 보안 강화의 요구에 대응이 유연한 차세대 아키텍처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헌법재판업무의 효율적 처리 가능

자료: 헌법재판소

-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6년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이후, 2027년에는 그 결과에 따라 본 사업 예산을 신청하고, 2028년에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센터 필수 운영 설비를 구축하며, 2029년에는 강남통합청사가 완공을 전제로 신규 데이터센터 내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헌법재판정보시스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헌법재판소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이후 추진 계획 >

구분	주요 내용
본 사업 사전준비	· '26년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 '27년 ISP 결과 검토(기획재정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본 사업 예산 신청
본 사업 추진	· '28년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센터 필수 운영설비 구축 · '29년 국가통신망 및 전용회선 구축, 신규 데이터센터 내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헌법재판정보시스템 이전 · '30년 본청 재해복구센터 구축 및 중요서비스 이중화 구성

자료: 헌법재판소

□ 이러한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행을 위한 2026년도 예산요구액은 5억 3,300만원인바, 헌법재판소는 「ISP 수립 공통가이드」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사전정 가이드」 등을 바탕으로 컨설팅 업무량, 업무 특성, 난이도 및 ISP 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고 설명함.

< 헌법재판소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비 산정 내역 >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533,000	○ 일반연구비(260-01): 533,000천원 {컨설팅업무량(45.8 × 0.98 = 44.884) × 2025년 ISP 단가(11,290,936)} × 1.1(부가세 포함) × 0.957(할인률: 4.3%) ※ 산출근거: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가이드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 (단위: 원)								
업무		업무별 가중치 (가이드 p.57 참조)	해당여부 (O, X)	총업무 가중치	업무 요소 (가이드 p.58 참조)	난이도	해당여부 (O, X)	난이도 계산
소요제기	경영환경 분석	3.5	X	45.8	업무규모 (단순)	0.7	○	0.98
	정보기술 환경분석	3.7	○		업무규모 (보통)	1.0	X	
	제도/규정 분석	2.0	○		업무규모 (복잡)	1.3	X	
현황분석	경영전략 분석	2.8	X		업무의특성 (단순)	0.6	X	
	업무분석	6.1	○		업무의특성 (보통)	1.0	○	
	정보시스템 분석	6.1	○		업무의특성 (복잡)	1.4	X	
	벤치마킹	2.5	○		기존시스템 (단순)	0.7	X	
	차이분석	2.0	○		기존시스템 (보통)	1.0	○	
목표모델 수립	정보화 전략 수립	3.3	○		기존시스템 (복잡)	1.3	X	
	정보시스템 구조 설	5.0	○		ISP 유형 (보통)	1.0	X	
	정보관리 체계수립	3.8	○		ISP 유형 (복잡)	1.4	○	
	제도/규정 개선안 수	2.5	X		정보자원규모 (단순)	0.6	X	
이행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3.8	○		정보자원규모 (보통)	1.0	○	
세부계획 작성	소요예산 산출	3.5	○		정보자원규모 (복잡)	1.4	X	
	기대효과 산정	2.5	X					
	제안요청서 작성	4.0	○					
	컨설팅업무량 계산 (가중치 x 난이도)						44.884	
ISP 단가(2025년)						11,290,936		
직접경비						0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506,782,371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부가세 포함)						557,460,609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런데 최근 3년간 데이터센터 수립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ISP 사업을 수행한 타 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평균 사업예산은 4억 5,600만원, 평균 사업 수행기간은 5개월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고, 헌법재판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가장 유사한 내용(데이터센터 구축 및 차세대시스템 구축)의 사업을 수행한 감사원의 경우도 사업예산은 4억 3,100만원, 사업 수행기간은 4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헌법재판소가 사업 수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액(5억 3,300만원) 및 사업 수행 예상 기간(6개월)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사업’의 경우 차세대 시스템 구축 ISP 사업과 데이터센터 구축 ISP 사업이 병합된 형태에 해당하고, 유사 내용을 가진 감사원의 ISP 사업은 2022년에 수행한 사업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최근 3년간 데이터센터 구축 등 관련 ISP 사업 수행 사례 >

(단위: 백만원)

구분	기관	사업명	사업 예산	사업 기간	공고 시기
데이터센터구축 + 차세대 시스템 구축	헌법재판소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533 (예정)	6개월 (예정)	‘26. 03. (예정)
차세대 시스템 구축	한국무역보험 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정보계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420	4개월	‘25. 01.
차세대 시스템 구축	금융정보 분석원	차세대 RBA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사업	498	4개월	‘25. 01.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센터 구축)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정보화전략수립(ISP) 사업	435	6개월	'24. 11.
데이터센터 구축	부산광역시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600	8개월	'24. 09.
데이터센터 구축	한국토지주택 공사	LH 데이터센터 신설 기본계획(ISP) 수립 용역	422	4개월	'24. 07.
차세대 시스템 구축	병무청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420	6개월	'23. 03.
데이터센터 구축 + 차세대 시스템 구축	감사원	차세대 OASYS 및 전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 용역	431	4개월	'22. 09.
차세대 시스템 구축	국회사무처	「차세대 의정지원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418	5개월	'22. 06.

자료: 헌법재판소

- 다만,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2026년 수행하고자 하는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사업은 타 기관이 수행한 데이터센터 구축 등 관련 ISP 사업의 과업 범위 및 예산 규모가 적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동 사업이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의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ISP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및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집행 관리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1035-50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사업은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헌법재판 연구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안정적인 전자도서관 운영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다음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헌법재판 연구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국민을 위한 법률정보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망 분리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심각한 노후화와 및 복잡성으로 운영 한계에 이른 현 도서관 시스템을 표준화·지능화된 최신 기술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 (법률정보 WEB-DB 구독) 국내외 법률정보 WEB-DB 등 전자정보서비스 구독
- (전자도서관시스템 등 확충) 도서관 홈페이지 등 전자도서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개선

- (전자도서관 일반운영 등) 도서관 RFID 시스템 장비, 복사기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입 및 전자도서관시스템의 운영·관리 지원

□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8,400만원(711.4%) 증액된 24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전자도서관운영 (정보화)	392	307	2,491	2,184	711.4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106	105	95	△10	△9.5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	2,230	2,230	100
법률정보 WEB-DB 구축	129	124	135	11	8.9
전자도서관 시스템 등 확충	44	51	4	△47	△92.2
전자도서관 일반운영 등	21	27	27	-	-
전자도서관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92	-	-	-	-

자료: 헌법재판소

나.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필요

□ 헌법재판소는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6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의 예산안은 22억 3,000만원으로 일반연구비(260-01) 17억

6,000만원, 자산취득비(430-01) 4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예산 편성 내역 >

총액	산출내역	비목
2,230백만원	- 망분리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470백만원 - 도서관업무시스템: 1,142백만원 - 전자자료 통합시스템: 232백만원 - 전자통제시스템: 386백만원	1,760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470백만원 자산취득비(430-01)

자료: 헌법재판소

□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하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라 함)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신뢰성 있는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AI 기반 고도화로 재판 및 연구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차세대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임.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동 사업은 크게 ①헌법재판 특화 서비스 확대 및 선진 연구지원체계 강화, ②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률자료 이용 편의 기능 제공, ③데이터 기반 도서관 업무 혁신을 위한 차세대 전자도서관 구축, ④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안전한 인프라 구축 및 법률지식정보 공유체계 구현으로 구분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단계에 걸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
- 헌법재판소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2024년도에 수립한 바 있음.³⁶⁾

<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4개년 계획 >

추진 전략	2026	2027	2028	2029
1. 헌법재판 특화 서비스 확대 및 선진 연구지원체계 강화		대한민국헌법정보시스템		
		세계헌법정보시스템		
			언어별 특화번역 및 법률용어 시스템	
	법률정보 데이터 전자통제시스템 구축			
2.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률자료 이용 편의 기능 제공			GPT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검색시스템	
			온라인 참고봉사 및 My Library시스템	
				데이터시각화 시스템 및 통계 관리시스템
				미디어월 운영 시스템 개선
				스마트도서관 운영시스템
3. 데이터 기반 도서관 업무 혁신을 위한 차세대 전자도서관 구축	도서관 업무시스템 고도화			
	전자자료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데이터 추출·관리 시스템	
		발간자료 관리 시스템		
4.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안전한 인프라 구축 및 법률지식정보 공유체계 구현	망분리 및 클라우드 인프라 적용			
				FPA 및 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비 (74억원)	2,230백만원	1,104백만원	2,892백만원	1,194백만원

자료: 헌법재판소

□ 2026년에는 해당 사업의 1단계로써, 법률정보 데이터 전자통제시스템 구축³⁷⁾, 도서관업무시스템 고도화, 전자자료 통합시스템 구축,

36) 전자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예산액 93백만원, 집행액 92백만원

37) 저자, 학회명 등 특정한 용어를 표준화하여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정보 검색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망분리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 4개 시스템의 구축 또는 고도화가 계획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는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전 단계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헌법재판소도서관 시스템은 외부망에서 운영되어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강화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함³⁸⁾.

- 서버 해킹, DDos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³⁹⁾.

38) 2026년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로 망분리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2029년 4단계로 RPA 및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RPA 및 데이터 개방 시스템) 강화된 데이터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유관 기관 법률자료를 자동 수집(RPA)하고, API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유관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체계 마련

39) 동아일보, “법원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1만8000명”, 2024. 10. 23.

< 사이버 위협 유형별 침해사고 신고 현황 >

[단위 : 건수]

구분	연도	2023		2023		2024		2024		2025	
		(상반기)	비율	(하반기)	비율	(상반기)	비율	(하반기)	비율	(상반기)	비율
침해 사고 신고	DDoS 공격	124	18.7%	89	14.5%	153	17.0%	132	13.4%	238	23.0%
	악성코드	156	23.5%	144	23.5%	106	11.8%	123	12.4%	115	11.1%
	(랜섬웨어)	(134)	(20.2%)	(124)	(20.2%)	(92)	(10.2%)	(103)	(10.4%)	(82)	(7.9%)
	서버 해킹	320	48.2%	263	42.9%	504	56.1%	553	56.0%	531	51.4%
	기타	64	9.6%	117	19.1%	136	15.1%	180	18.2%	150	14.5%
합 계		664		613		899		988		1,034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5년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보고서'

□ 둘째, 헌법재판소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법원도서관 등도 다년에 걸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으로 유관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참조하되, 헌법재판소에서 생산하는 자료에 맞는 데이터 구조 및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필요함.

< 도서관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기간 및 예산 비교 >

구분	법원도서관	서울도서관	헌법재판소도서관
사업	미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025년~2029년(5개년) - 180억원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 - 2023년~2027년(5개년) - 140억원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2026년~2029년(4개년) - 74억원

자료: 헌법재판소

- 또한,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인 헌법재판 및 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⁴⁰⁾, 헌법

재판소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도서관업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⁴¹⁾.

□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맞추어 최신 기술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급변하는 AI 검색 등 기술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에는 초기에 구축한 시스템이 이전 세대 기술일 가능성이 있음⁴²⁾.

- 따라서, 시스템 구축 시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 아키텍처와 유연한 기술도입 구조를 설계하여 중장기적 확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⁴³⁾.

□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4개년에 걸쳐 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개 시스템을 구축 또는 고도화하는 대규모 사업으로⁴⁴⁾, 헌법재판소는 사업 목적에 맞는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 등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한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40) 2026년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로 법률정보 데이터 전거통제시스템을, 2027년 2단계로 대한민국헌법정보 시스템 및 세계헌법정보시스템을, 2028년 3단계로 언어별 특화번역 및 법률용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41) 2026년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로 도서관 업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임.

42) 조선일보, “AI 발전 속도, 무어의 법칙보다 훨씬 빠르다”, 2025. 2. 13.

43) 2028년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3단계로 GPT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검색시스템을, 2029년 4단계로 데이터시각화 시스템 및 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44) 헌법재판소는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현재 7개인 전자도서관의 시스템이 3배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음.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2022 ~ 2026년) 세부사업-목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안
일반회계(총 액)	52,862	52,862	50,072	55,492	55,492	53,752	56,766	56,766	54,418	58,524	62,109
① 인건비 (직접수행, 1001-150)	31,237	31,237	29,813	31,860	31,860	30,995	33,533	33,533	32,202	34,692	35,353
◦인건비(110)	31,237	31,237	29,813	31,860	31,860	30,995	33,533	33,533	32,202	34,692	35,353
② 본부기본경비 (직접수행, 1011)	6,346	6,346	5,680	6,506	6,506	6,270	6,991	6,991	6,697	6,955	7,274
◦인건비(110)	726	726	639	741	741	682	800	800	730	830	899
◦운영비(210)	2,547	2,547	2,412	2,967	2,967	2,883	3,037	3,037	2,913	3,249	3,221
◦여 비(220)	145	145	112	140	140	140	143	143	140	177	205
◦업무추진비(240)	443	443	435	466	466	464	540	540	539	600	618
◦직무수행경비(250)	1,748	1,748	1,669	1,788	1,788	1,720	1,764	1,764	1,702	1,785	1,771
◦보전금(310)	2	2	1	2	2	-	2	2	-	2	2
◦민간이전(320)	155	155	135	158	158	137	173	173	143	177	193
◦유형자산(430)	117	117	117	244	244	243	131	131	130	135	165
◦무형자산(440)	462	462	160	-	-	-	400	400	400	-	200
③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직접수행, 1011)	451	451	408	461	461	416	441	441	412	426	436
◦인건비(110)	-	-	-	-	-	-	-	-	-	-	-
◦운영비(210)	275	275	251	285	285	253	271	271	256	264	269
◦여 비(220)	14	14	12	13	13	13	13	13	13	16	16
◦업무추진비(240)	44	44	39	44	44	44	44	44	44	45	45
◦직무수행경비(250)	83	83	73	83	83	71	79	79	66	69	74
◦민간이전(320)	-	-	-	-	-	-	-	-	-	-	-
◦유형자산(430)	34	34	34	36	36	36	34	34	33	32	31
④ 국선대리인보수등 (직접수행, 1031)	127	127	106	127	127	119	127	127	111	127	121
◦운영비(210)	127	127	106	127	127	119	127	127	111	127	121
⑤ 재판활동운영지원 (직접수행, 1031)	649	658	627	605	605	584	748	748	738	671	597
◦인건비(110)	13	13	13	13	13	13	14	14	14	14	21
◦운영비(210)	217	226	206	124	124	103	219	219	210	141	167
◦여 비(220)	1	1	-	1	1	1	1	1	1	1	1
◦업무추진비(240)	184	184	174	192	192	191	209	209	209	209	209
◦직무수행경비(250)	234	234	233	246	246	246	221	221	221	221	199
◦유형자산(430)	-	-	-	30	30	30	85	85	84	85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안
⑥ 본부운영지원 (직접수행, 1032)	3,835	3,835	3,536	3,926	3,926	3,587	4,624	4,624	4,221	4,292	4,033
◦인건비(110)	1,264	1,264	1,225	1,264	1,304	1,224	1,351	1,351	1,309	1,406	1,555
◦운영비(210)	721	721	681	796	796	765	975	975	922	770	779
◦여 비(220)	33	33	11	33	33	29	33	33	30	33	33
◦업무추진비(240)	24	24	20	26	26	20	26	26	26	26	26
◦연구용역비(260)	45	45	41	50	50	45	50	50	45	50	45
◦민간이전(320)	244	244	212	242	242	199	251	251	218	258	291
◦건설비(420)	1,353	1,353	1,197	1,306	1,306	1,138	1,823	1,823	1,555	1,475	885
◦유형자산(430)	151	151	151	169	169	169	115	115	114	275	421
◦무형자산(440)	-	-	-	-	-	-	-	-	-	-	-
⑦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직접수행, 1033)	1,858	1,858	1,825	1,867	1,867	1,837	1,878	1,878	1,864	1,865	1,856
◦운영비(210)	1,704	1,704	1,689	1,710	1,710	1,690	1,710	1,710	1,697	1,719	1,691
◦여 비(220)	30	30	12	30	30	23	29	29	29	29	29
◦업무추진비(240)	23	23	23	26	26	24	26	26	26	26	26
◦연구용역비(260)	-	-	-	-	-	-	22	22	21	-	50
◦보전금(310)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30
◦유형자산(430)	65	65	65	65	65	65	55	55	55	55	30
⑧ 해외연수 (직접수행, 1034)	518	518	518	580	580	580	506	506	494	565	604
◦운영비(210)	147	115	114	169	146	146	123	123	111	125	145
◦여 비(220)	371	403	403	411	434	434	383	383	383	400	459
⑨ 국제교류 (직접수행, 1034)	499	499	449	573	573	501	587	587	517	614	555
◦운영비(210)	280	280	270	351	351	336	358	358	340	355	371
◦여 비(220)	188	188	152	182	182	132	188	188	152	219	146
◦업무추진비(240)	28	28	25	37	37	30	37	37	22	37	35
◦해외이전(340)	3	3	3	4	4	3	4	4	3	4	4
⑩ 재판자료확충 (직접수행, 1035)	406	406	367	420	420	402	470	470	460	386	340
◦운영비(210)	190	190	151	204	204	186	204	204	194	160	170
◦유형자산(430)	216	216	216	216	216	216	266	266	266	226	170
⑪ 헌법재판정보화 (직접수행, 1035)	6,618	6,617	6,451	8,242	8,242	8,163	6,443	6,443	6,310	7,499	8,424
◦운영비(210)	4,181	4,181	4,053	4,181	4,399	4,361	4,771	4,771	4,674	5,004	5,276
◦업무추진비(240)	2	2	1	2	2	2	2	2	2	2	2
◦연구용역비(260)	873	873	842	873	1,862	1,821	657	657	622	1,025	1,264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안
◦유형자산(430)	1,562	1,562	1,557	1,562	1,979	1,979	1,012	1,012	1,012	1,468	1,882
⑫ 전자도서관운영 (직접수행, 1035)	293	294	292	300	300	297	393	393	392	307	2,491
◦인건비(110)	5	5	5	6	6	6	5	5	5	5	5
◦운영비(210)	128	129	129	145	145	145	146	146	144	146	157
◦연구용역비(260)	156	156	154	145	145	142	238	238	238	152	1,855
◦유형자산(430)	4	4	4	4	4	4	4	4	4	4	474
⑬ 예비금 (직접수행, 1036)	25	25	—	25	25	—	25	25	—	25	25
◦예비비및기타(710)	25	25	—	25	25	—	25	25	—	25	25

자료: 헌법재판소

참고자료 2

2025년 주요 사업 세출예산 집행 현황

(2025년 9월 말,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재판활동 지원	국선대리인 보수등	소 계		127	95	74.8
		210	운영비	127	95	74.8
	재판활동 운영지원	소 계		671	412	61.4
		110	인건비	14	8	57.1
		210	운영비	141	56	39.7
		220	여비	1	-	-
		240	업무추진비	209	125	59.8
		250	직무수행경비	221	138	62.4
		430	유형자산	85	85	100.0
본부 운영지원	본부 운영지원	소 계		4,292	2,377	55.4
		110	인건비	1,406	992	70.6
		210	운영비	770	530	68.8
		220	여비	33	17	51.5
		240	업무추진비	26	12	46.2
		260	연구용역비	50	31	62.0
		320	민간이전	258	169	65.5
		420	건설비	1,475	591	40.1
		430	유형자산	275	33	12.0
헌법재판 연구원 운영지원	헌법재판 연구원 운영지원	소 계		1,865	1,391	74.6
		210	운영비	1,719	1,271	73.9
		220	여비	29	19	65.5
		240	업무추진비	26	17	65.4
		310	보전금	36	36	100.0
		430	유형자산	55	48	87.3
국제교류 협력	해외연수	소 계		565	253	44.8
		210	운영비	125	37	29.6
		220	여비	400	216	54.0
	국제교류	소 계		614	328	53.4
		210	운영비	355	224	63.1
		220	여비	219	93	42.5
		240	업무추진비	37	7	18.9
		340	해외이전	4	3	75.0

(2025년 9월 말,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정보자료 운영	재판자료확충	소 계		386	148	38.3
		210	운영비	160	63	39.4
		430	유형자산	226	86	38.1
	헌법재판 정보화	소 계		7,499	4,700	62.7
		210	운영비	5,004	3,393	67.8
		240	업무추진비	2	1	50.0
		260	연구용역비	1,025	544	53.1
		430	유형자산	1,468	762	51.9
	전자도서관 운영	소 계		307	243	79.2
		110	인건비	5	3	60.0
		210	운영비	146	140	95.9
		260	연구용역비	152	99	65.1
		430	유형자산	4	2	50.0
헌법재판소 예비금	예비금	소 계		25	-	-
		710	예비비및기타	25	-	-

자료: 헌법재판소

참고자료 3

연도별 심판사건의 유형별 접수·처리 현황

(2025년 9월 말 기준, 단위: 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사건합계(A)	1,951	2,626	2,427	2,730	3,241	2,827	2,829	2,591	2,522	2,118
진행중 건수 합계(B)	-	-	-	4	26	74	141	246	386	525
결정 건수 합계(C)	1,908	2,598	2,372	2,675	3,151	2,701	2,655	2,308	2,106	1,576
취하건수 합계(D)	43	28	55	51	64	52	33	37	30	17
○ 헌가사건										
-접수 건수	20	35	17	31	20	38	43	25	18	18
-진행중 건수	-	-	-	-	1	2	7	10	12	17
-결정 건수	20	35	17	31	18	36	33	12	5	1
-취하 건수	-	-	-	-	1	-	3	3	1	-
○ 헌나사건										
-접수 건수	1	-	-	-	-	1	-	4	9	-
-진행중 건수	-	-	-	-	-	-	-	-	1	-
-결정 건수	1	-	-	-	-	1	-	4	8	-
○ 헌다사건										
-접수 건수	-	-	-	-	-	-	-	-	-	-
-결정 건수	-	-	-	-	-	-	-	-	-	-
○ 헌라사건										
-접수 건수	9	2	2	6	5	2	5	10	9	6
-진행중 건수	-	-	-	-	-	-	-	4	5	2
-결정 건수	7	1	2	6	5	2	5	6	3	1
-취하 건수	2	1	-	-	-	-	-	-	1	3
○ 헌마사건										
-접수 건수	1,379	1,987	1,819	2,062	2,472	2,201	2,322	1,935	1,788	1,683
-진행중 건수	-	-	-	2	13	46	76	116	197	349
-결정 건수	1,350	1,963	1,769	2,014	2,405	2,111	2,221	1,798	1,566	1,321
-취하 건수	29	24	50	46	54	44	25	21	25	13
○ 헌바사건										
-접수 건수	542	602	589	631	744	585	459	617	698	411
-진행중 건수	-	-	-	2	12	26	58	116	171	157
-결정 건수	530	599	584	624	723	551	396	488	524	253
-취하 건수	12	3	5	5	9	8	5	13	3	1

* 접수 건수(A): 당해연도 기준 접수된 사건 수

* 진행중 건수(B), 결정 건수(C) 및 취하 건수(D): 당해연도에 접수된 사건을 대상으로 2025년 9월말 기준 진행중(B)이거나 결정(C) 또는 취하(D)된 사건 건수임

